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  
제1차 환경노동위원회

#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〉

■ 송기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482호)

2024. 9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..... | 2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
## I. 제안경위

2024년 7월 8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·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.

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.

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42조제3항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

개정안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·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).

#### [ 개정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2조(국고보조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br><br>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·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br>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42조(국고보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u>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·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div>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2023년 기준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14,665건으로, 전체 악취의 37.2%를 차지하며, 2018년 6,705건에 비하여 약 2.2배 증가하였음.

**[전국 악취 민원 및 축산악취 민원 현황(2023)]**

| 구분 | 악취 민원(건) | 축산악취   |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|          | 민원(건)  | 비율(%) |
| 합계 | 39,457   | 14,665 | 37.2  |
| 서울 | 2,040    | -      | -     |
| 부산 | 1,432    | 15     | 1.0   |
| 대구 | 1,973    | 106    | 5.4   |
| 인천 | 1,856    | 116    | 6.3   |
| 광주 | 830      | 2      | 0.2   |
| 대전 | 1,295    | -      | -     |
| 울산 | 763      | 20     | 2.6   |
| 세종 | 347      | 129    | 37.2  |
| 경기 | 6,418    | 1,398  | 21.8  |
| 강원 | 972      | 631    | 64.9  |
| 충북 | 1,490    | 748    | 50.2  |
| 충남 | 4,737    | 2,769  | 58.5  |
| 전북 | 3,895    | 2,273  | 58.4  |
| 전남 | 2,051    | 889    | 43.3  |
| 경북 | 2,704    | 1,136  | 42.0  |
| 경남 | 4,568    | 2,435  | 53.3  |
| 제주 | 2,086    | 1,998  | 95.8  |

자료: 환경부

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액비순환시설·탈취기·공기정화시설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2022년 기준 42,167호로, 전체 축산농가 82,843호의 50.9%에 해당함.

## [전체 축산농가 및 악취저감시설 보유 농가 현황]

| 구 분        |         | 한·육우   | 젖소    | 돼지    | 닭     | 오리   | 계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농가수(호)     |         | 69,903 | 4,766 | 3,844 | 3,715 | 615  | 82,843      |
| 악취저감<br>시설 | 설치 농가   | 33,833 | 3,293 | 2,391 | 2,348 | 263  | 42,167      |
|            | 비율(%)** | 48.4   | 69.1  | 62.2  | 63.2  | 42.8 | <u>50.9</u> |

자료: 환경부

\* 주요 축종(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) 축산농장 대상 전수조사 실시(말, 양 등 기타 축종 미포함)

\*\* 조사에 응한 농가(82,843호) 중 '없음'으로 답변하거나 해당 문항에 무응답한 농가수 제외

개정안은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별 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다만, 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법 제3조<sup>1)</sup> 및 제42조<sup>2)</sup>, 「축산법」 제47조<sup>3)</sup>에 근거하여 이미 국비로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, 축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적고,<sup>4)</sup>

1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·개발·지원하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2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국고보조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·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3) 「축산법」 제43조(축산발전기금의 설치)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47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6. 축산 분뇨의 자원화·처리 및 이용

현행법 제42조에 따라 전국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반입·처리하고 있으며,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별도 비용지원을 통하여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 시설·장비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 체계상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임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546 |

4) 농림축산식품부는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023년 기준 축산악취개선 사업(378억원, 지방자치단체보조, 용자),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(5억원, 지방자치단체보조)을 편성하였음.

**※ 축산악취개선 사업(농식품부) 개요**

- 세부사업명 : 가축분뇨처리지원(재원 : 축산발전기금)
- 법적 근거 :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등
- 지원 대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(축산법 제22조), 허가·신고한 배출시설 운영 중인 축산농가(가축분뇨법 제11조) 등
- 사업 내용 :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계획에 따른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에 필요한 기계·장비·시설 등 지원

※ 참고자료: 축산악취개선 사업 개요 (농림축산식품부 자료)

## 1. 축산악취개선

### □ 사업개요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목적/내용               | ·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(시군) 축산악취 개선계획에 따른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에 필요한 기계·장비·시설 등 지원        |
| 예산반영추이<br>(최근 5년간 예산) | (‘19) 45,291, (‘20) 38,787, (‘21) 54,299, (‘22) 47,185, ( <b>‘23</b> ) 37,800백만원 |
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| ·’98년~계속 * ’21년부터 사업개편 추진(사업 통폐합, 보조율 통일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형태<br>(지원조건, 지원율)   | ·자치단체자본보조(국비 20%, 지방비 20%, 융자 50%, 자부담 1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행위주체<br>(시행주체)      | ·지자체(시군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근거                  | ·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<br>·「축산법」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        |
| 집행률/실집행률              | · ( <b>‘23</b> ) 100%/70.1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사업 핵심내용(지원내용)

- (사업내용)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계획에 따른 축산악취저감시설 등 지원
  - (악취저감시설·장비) 바이오커튼, 바이오필터, 탈취탑(스크러버), 안개분무시설,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·장비 등
  - (가축분뇨처리시설(개보수 포함)) 퇴비·액비화시설(액비순환시스템 포함), 정화시설, 바이오가스, 고체연료(바이오차 포함) 등 생산·공급 시설
  - (부대기계·장비) 퇴비·액비살포장비, 로더,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·장비 등
- (지원대상) 축산농가, 농업법인 등
- (시행주체) 지자체(시도, 시군구)

## 2. 악취측정ICT기계장비

### □ 사업개요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목적/내용               | ·실시간 암모니아, 온·습도 등 데이터 측정을 위해 축산농가, 자원화 시설 등에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               |
| 예산반영추이<br>(최근 5년간 예산) | · ('19) 360, ('20) 883, ('21) 3,300 ('22) 1,000, ('23) 500백만원              |
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| ·'17년~계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형태<br>(지원조건, 지원율)   | ·자치단체자본보조(국비50%, 지방비 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비지출장부               | ·지자체(시군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근거                  | ·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<br>· 「축산법」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|
| 집행률/실집행률              | · ('23) 100%/96.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사업 핵심내용(지원내용)

- (사업내용)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·장비를 지원하여 악취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관리·지원



- (지원대상)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·개보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
- (설치현황) 전국 730개소

| 구분   | 설치현황(농가수) |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|
|      | 설치        | 진행 |
| 2017 | 42        | -  |
| 2018 | 45        | -  |
| 2019 | 41        | -  |
| 2020 | 125       | -  |
| 2021 | 321       | -  |
| 2022 | 100       | -  |
| 2023 | 49        | 1  |
| 2024 | 7         | 43 |
| 소계   | 730       | 2  |